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사무의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무 명: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위탁사무: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

-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른 정신건강사업
- 2)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3) 정신건강증진사업
- 4) 자살예방사업
- 5)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 시설현황

시설명	건물면적(㎡)	종사자	센터장	소재지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86.2	11명	이은주	선산읍 선주로 121 (선산보건소 2층)

* 센터장 1, 방문보건팀장 1, 주무관 1, 팀원 8

○ 위탁기간: 2025. 1. 1. ~ 2029. 12. 31. (5년)

○ 소요예산: 530백만원(국263, 도80, 시187) ※ 2024년 기준

※ 2025~2029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개요: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

1)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2) 수탁기관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대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센터장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적정성 검토: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역할)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선산보건소 2층에 위치한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2018. 12월 개소 이후 시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센터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질환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통하여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읍·면 복지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읍·면 지역의 주민들도 충분히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